

축산재해관련 Q & A

Q

목장내 축사시설의 개보수시 고용인이 재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상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A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대한 시행령 제2조(정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보험 보상여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2,000만원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기준 금액의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그 이하의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보상의 책임은 시공에 대한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 시공면허가 있는 시공업체에 도급을 발주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의 책임이 시공업주에게 있으며(증빙자료 : 도급계약서, 관련 시공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서류 등), 전문 건설시공면허가 없는 일반 인력사무소로부터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보상의 책임은 건축주(목장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더 소요되더라도 만약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전문시공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요금액이 크지 않은 시공의 경우에도 목장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발생 시 분쟁을 피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참조 : 법제처 www.moleg.go.kr
노동부 산업안전팀 허서혁(02-504-2052)
근로복지공단 문태진(02-2670-0569)